

충청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내 무 위 원 회

충청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提出者 : 충청북도지사

2.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

가. 제출일자 : 1993년 6월 2일

나. 회부일자 : 1993년 6월 2일

3. 提案理由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 규정한 면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4. 主要骨子

가. 면제대상 법조문 정리

현행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 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의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시설등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자"로 면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면제세목 : 취득세, 등록세

5. 檢討意見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농촌의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등에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건실한 기업이 농촌지역에 입주토록 유도하여 농촌의 농외소득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기존의 명시된 조례 제2조의 면제 대상에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승인을 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자 및 농공단지 개발의 토지, 시설등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자"로 문구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본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